

장려금 지급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업주

계속고용제도 시행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 명시)

사업주 → 고용센터

장려금 지급 신청 (분기)

고용센터

요건확인

고용센터 → 사업주

확인 및 검토, 지원금 지급



구비 서류

- 1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2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 3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장려금 신청은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정책자료실(중장년정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센터 연락처

지방관서	전화번호	지방관서	전화번호
서울청 서울센터	02-2004-7371	통영지청 통영센터	055-650-1814
서울청 서초센터	02-580-4977	대구청 대구고용센터	053-667-6006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센터	02-3468-4703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센터	053-605-6462, 6477, 6479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센터	02-2142-8924	대구서부지청 달성센터	053-605-9518-9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센터	02-2077-6004	대구서부지청 칠곡센터	054-970-1906-8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센터	02-2639-2403	포항지청 포항센터	054-280-3055, 3057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센터	02-2171-1800	포항지청 경주센터	054-778-2516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센터	02-3282-9353	구미지청 구미센터	054-440-3363
충부청 인천센터	032-460-4673	영주지청 영주센터	054-639-1146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센터	032-540-5641	영주지청 문경센터	054-559-8257
인천서부지청 인천서부센터	032-540-2051	안동지청 안동센터	054-851-8061
부천시청 부천센터	032-320-8974	광주청 광주센터	062-609-8500
부천시청 김포센터	031-999-0940	광주청 광산센터	062-960-3203
고양지청 고양센터	031-920-3957	전주지청 전주센터	063-270-9210
의정부지청 의정부센터	031-828-0832-5, 0893, 0838	전주지청 정읍센터	063-530-7501
경기지청 수원센터	031-231-7864	전주지청 남원센터	063-630-3915
안양지청 안양센터	031-463-0700	군산지청 군산센터	063-450-0639
안산지청 안산센터	031-412-6944	군산지청 부안센터	063-580-0501
성남지청 성남센터	031-739-3173	익산지청 익산센터	063-840-6551
평택지청 평택센터	031-646-1205	익산지청 김제센터	063-540-8406
강원지청 춘천센터	033-250-1975	목포지청 목포센터	061-280-0542
강릉지청 강릉센터	033-610-1923	목포지청 해남센터	061-530-2912
강릉지청 속초센터	033-630-1909	여수지청 순천센터	061-720-9169
원주지청 원주센터	033-769-0954	여수지청 광양센터	061-798-1906
태백지청 태백고용센터	033-550-8645	여수지청 여수센터	061-650-0150
태백지청 삼척고용센터	033-570-1906	제주센터	064-759-2450
영월출장소 영월센터	033-371-6261	대전청 대전센터	042-480-6000
부산청 부산센터	051-860-1923-7, 1931, 2072, 2100	대전청 공주센터	041-851-8507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센터	051-760-7244	대전청 세종센터	044-861-8993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센터	051-330-9970-2	대전청 논산센터	041-731-8601, 8661
창원지청 창원센터	055-239-0960	충주지청 충주센터	043-850-4035
울산지청 울산센터	052-228-1922 ~1924, 1926, 1942	충주지청 제천센터	043-640-9322
양산지청 김해센터	055-330-6434	청주지청 청주센터	043-229-0704-0709
양산지청 양산센터	055-379-2430	천안지청 천안센터	041-620-7448
진주지청 진주센터	055-760-6751	보령지청 보령센터	041-930-6259
		보령지청 서산출장소 서산센터	041-661-5614, 5603, 5664

기업과 고령 노동자가
함께하는 일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응원합니다!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720만원을 드립니다!
(분기별 90만원 2년간)



고령 노동자는 현재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경험이 많고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를
좀 더 오래 고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 1350 | 관할 고용센터

“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장려금 신청,
이렇게 준비하세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 ✓ 정년을 1년이상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 ✓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을 운영중인 기업이 정년을 ①연장 또는 ②폐지,
③정년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 방법으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것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관련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됐어요

관행적으로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 하여온 기업이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면서
시행일을 소급하는 경우
소급한 시행일부터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인정
(기존에는 취업규칙에 명시한 날을 시행일로 봄, 시행일 소급 불인정)



예시

A근로자를 정년퇴직('20.10.1.) 후
계속고용한 기업이 '21.3.1.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면서 그 시행일을
A근로자 정년퇴직일 이전인 '20.9.1.로
소급하여 명시하는 경우 A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인정

※ 다만, '20.1.1.~'21.12.31. 사이에 첫 번째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한시적 지원('19.12.31.이전에 정년에 도달하여
계속근로 중인 근로자는 지원불가)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 ◎ 지원금액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30만원)
- ◎ 지원기간
기업당 2년간 지원(매분기 피보험자수의 20% 한도)

계속고용제도 도입 및 지원방법

